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69호**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의 위임 법령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되고, 향토기업 요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5”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로 변경하여 위임 법령을 현행화(안 제1조)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6제1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향토기업 요건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1일 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기업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trustkis@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3) 팩스 : (044) 204 - 75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 (044) 204 - 75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